

통 상 법 률

목 차

2022년 제4호 (통권 제157호)

◆ 논 단

1.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 검토
- TBT협정을 중심으로 - 류 창 수 / 3

◆ 해외동향

1. 제15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논의 동향 김 희 은 / 38
2.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분과 논의 동향 강윤성·장준혁 / 50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 검토

- TBT협정을 중심으로 -

주가봉 대사 류 창 수*

*논문접수 : 2022. 10. 19. *심사개시 : 2022. 11. 15. *게재확정 : 2022. 11. 20.

〈 목 차 〉

I. 서론	3. 유럽의회 개정 CBAM의 주요 내용
II. 탄소 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및 장단점	4. 향후 입법 전망
1. 탄소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IV. 동 국경조치의 WTO 합치성에 대한 검토
2. 문제점 및 비용	1. 개관
III. 탄소국경조정조치와 EU의 CBAM 개요	2. 기존 국제통상법에 대한 합치성 검토
1. CBAM의 주요 내용 (2021년 7월 초안 중심)	3. TBT 협정 개관
2. CBAM의 개정 경과	4. TBT 협정상 기술 규정과 CBAM
	V. 결론

I. 서론

2019.12월 출범한 EU집행위원회(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는 EU가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동참한 2050년 탄소 중립 약속 실천을 위해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그 중간 경로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Fit for 55 in 2030 package”를 지난 2021.6월에 발표했다. “Fit for 55”는 대규모 재정 투자, EU 배출권 거래제(ETS)의 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목표의 상향 조정과 함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등 온실가스 규제 관련 제도 개혁 안을 포함하고 있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합니다.

EU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최대 장애중 하나는 시멘트,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carbon intensive industry)에서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라고 할 수 있다.¹⁾ 현재 전 세계적 탄소배출의 27%가 국제 교역 상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데, EU의 역내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은 신흥개도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데다 EU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유사한 의무가 없는 개도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U는 역내외간 탄소배출 비용의 차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이전과 친환경 설비투자로 인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실가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배출권 구입의무 제도를 통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CBAM을 도입

한 것이다.²⁾

이는 국내정치적으로 업체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 동시에 WTO 규범에 위반될 뿐 아니라 EU의 교역대상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초래하여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동 국경조치들이 발효한다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철강, 시멘트 등의 수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³⁾

그간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학계 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주로 GATT 제2조의 국경세 조정,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 GATT 제20조의 예외 조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⁴⁾ 그러나, 본고에서는 CBAM과 같은 탄소국경조치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조치로서 WTO 협정 중에서 제품의 “공정과 생산 방법(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협정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TBT 협정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TBT 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CBAM의 WTO 합치성(WTO-

1) EU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s://europarl.europa.eu/press-room> “Press Releases, CBAM: Parliament pushes for higher ambition in new carbon leakage instrument”, 2022.6.22.

2)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특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 이전 또는 수입 증가를 통해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김수정, “탄소국경조정의 주요내용 및 영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21-027

4) 김호철,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통상법률, 2021-02

compatibility)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 TBT 협정의 주요 개념의 적용 범위와 관련 WTO 판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WTO체제 내에서 동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향후 최종 법안에서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의 분석은 일단 지난 2021.7월 법안의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다음 장(2장)에서는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도입 논거와 도입 시 장단점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입법 경과 및 동 법안상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국경조치들의 WTO 합치성에 대해 WTO 협정 및 조항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탄소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및 장단점

1. 탄소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도입하면 생산자간 공정 경쟁(level playing field) 실현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라는 측면에서 호소력이 있다. 2006년 영국 경제학자 Stern경의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인류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위한 시장실패의 사례로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 the social cost of carbon)하기 위해 정부개입과 정부 간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⁵⁾ 동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이 실패할 경우 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며, 경쟁력 조항 및 국경조치의 도입도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즉,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동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의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자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입법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관련업계는 동 탄소 국경조정 조치를 기후변화 입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게 된다.⁶⁾

5) Nicholas Stern,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executive summary, <http://www.hm-treasury.gov.uk/>

6) R.Ismer and K.Neuhoﬀ, Border Tax Adjustment: A Feasible Way to Address Non participation in Emission Trading, CMI Working Paper 36 Jan.2004 pp.4-8, <http://ideas.repec.org/p/cam/>

나. 국제협력의 촉진

동 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여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와 압력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로 활용되어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⁷⁾ 향후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반대로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의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 메카니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전력협회(AEP: American Electric power) 및 미국 전력노조(IBEW: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 Worker) 등 온실가스 감축 입법에 직접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 및 노조들이 미국 의회에 계속 동 탄소조정 메카니즘의 도입을 제안하여 왔으며⁸⁾ 이후 미국 의회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인 “미국청정에너지 안보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일명 Waxman-Markey법안)을 의회

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⁹⁾ 이후 2022.6월에는 미국 Sheldon Whitehouse (D-RI) 상원의원이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민주당의 Chris Coon (D-DE) 상원의원 뿐 아니라 공화당의 Martin Heinrich (R-ND) 의원 등 양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⁰⁾

2. 문제점 및 비용

가. 경제적 비효율성

2006년 Stern 보고서는 탄소 누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일방적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무역장벽 수립은 경제적으로 항상 비효율적이며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일수록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¹¹⁾ EU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간

7) Karp, Larry S and Jinhua Zhao, A proposal for the Design of the Successor to the Kyoto Protocol. Discussion paper 2008-0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oject on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

8) Michael Morris and Ed Hill, Trade is the Key to Climate Change, Energy Daily 20 Feb 2007, <http://www.ujae.org/globalwarming/>

9) 2009년 110회 의회에 제출된 기후변화 입법의 자세한 설명은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PPIE, 2009)”, 류창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협정상 적법성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93호, (2010) pp.22-24.

10) 2022.6월 의회에 제출된 기후변화 입법(CCA: Clean Competition Act)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illiam Alan Reinsch, “Trade Tools for Climate: Transatlantic Carbon Border Adjustment”, (2022.7.20. CSIS.org)

역내에서 배출권할당제 등을 시행하며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의 탄소누출 우려에 대해 무상할당으로 대응해 왔다.

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및 남용가능성

미국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의 Trevor Houser는 기후변화 입법에 의한 경쟁력 약화 우려는 과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¹²⁾ Houser는 미 제조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제지, 비철금속, 유리 등 5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미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5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규모는 미 GDP의 3%에 불과하고 미 전체 고용의 2%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일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전체 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기후변화 입법으로 인한 비용이 혜택보다 클 수

있다고 본다.¹³⁾

다. 교역국 및 산업간 마찰 우려

동 국경조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유인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협력에 위한 신뢰 형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⁴⁾ 미국의 국경조치에 대한 입법은 여타 경쟁상대국으로부터 유사한 입법을 유발하여 무역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¹⁵⁾ 상기 미국 의회가 제출한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이 EU의 CBAM이 나온 이후 제출된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경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선정 문제 및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상기 미국의 CBAM의 경우 탄소다배출 산업 9개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지만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여타 산업의 이의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1) Nicholas Stern, op.cit.

12) 동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Leveling the carbon playing field” 참조, Trevor Houser외 (200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42-57

13) 온실가스 감축 입법에 따른 유럽의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제기한 OECD 연구 결과도 있다. 톤당 CO₂ 가격이 15 유로 일 경우 2010년도 유럽의 시멘트 생산이 7.5% 감소하고, 시멘트 생산이 유럽이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The competitiveness impact of CO₂ Emissions reduction in the cement sector, COM/ENV/EPOC/CTPA/CFA(2004) Nov.2005

14) Houser Trevor 외, Leveling the carbon playing field, PPIE, 2008. Washington DC

15) Jason Bordof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Brookings Institution. 2007.9.

라. 이행비용 및 현실적인 측정의 어려움

기후변화 법안상 국경조치의 이행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carbon footprint)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전제로 하지만, 동 측정은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동 제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에너지별로 또는 생산 방식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량에 대한 측정은 결국 생산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국 생산자들이 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생산방식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US predominant method of production). 이 방식은 GATT 미국-Superfund case에서 미국이 사용한 방식이며, GATT 패널은 미국의 동 산정방식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¹⁶⁾ 이후 WTO 미국-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휘발유의 질(quality)관련 미국내 정유업자가 업자별 개별적 기준(individual baseline)을 사용하도록 한데 비해 수입업자는

규정상 일률적 기준(statutory baseline)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수입휘발유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해외정유업자들로부터 정확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증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소기구로부터 배척되었다. 다만, 상소기구도 관련 자료가 아예 없어서 기준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수입 휘발유의 원산지를 모를 경우 규정상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¹⁷⁾ 다른 대안으로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계산(best available technology)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나, 상대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¹⁸⁾

III. 탄소국경조정조치와 EU의 CBAM 개요

1. CBAM의 주요 내용(2021년 7월 초안 중심)

가. CBAM의 법적 구성

“Fit for 55”에 포함된 CBAM은 규정

16) J.Andrew Hoerner and Frank Muller, Carbon Taxes for Climate Protection in a comparative world, A paper prepared for Swiss Federal Economic Affairs. June 1996.

17) AB report, US-Gasoline, WT/DS2/AB/R 20, May 1996.

18) 기타 온실가스 측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vel the carbon playing field”, pp.32-34 참조

(Regulation) 형태로서, ① 일반 사항, ② 신고자의 의무/권리, ③ CBAM 당국, ④ 배출권(CBAM certificate), ⑤ 국경에서 행정 절차, ⑥ 이행, ⑦ 위임행사, ⑧ 위임법률/위원회, ⑨ 보고/검토, ⑩ EU ETS와의 조율을 위한 과도 규정, ⑪ 시범적용 기간을 포함한 총 11개 장(chapter)의 36개 조항(Article)과 5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¹⁹⁾

나. 적용 범위²⁰⁾

EU 탄소국경조정 법안은 철강(합금철·철스크랩을 제외한 철강재), 전기,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의 대상 국가는 EU 국가로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이며, 예외 국가는 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 세우타(Ceuta), 메릴라(Melilla) 등 EU 외부영토이다. 수입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방법(단일제품, 복합제품, 초기 값 등)은 동 규정 Annex III에서 제시한다. 일단 동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 배출량은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direct emission)에 국한되고,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만이 부과되

며, 동 배출에는 제품별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 N₂O, PFCs 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5개 품목 중 철강, 전력, 시멘트는 CO₂ 배출량만 포함되며, 비료는 CO₂, N₂O 배출량을 포함하고, 알루미늄은 CO₂, PFCs 배출량을 포함하게 된다.

다.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EU 집행위원회는 CBAM 관련 업무(수입업자 승인, 수입업자 제공 정보 검토, CBAM 배출권 관리, 수입 관리 등)를 담당하는 CBAM 집행당국(Authority)을 신설하고, 동 CBAM 당국은 CBAM 배출권의 운영을 위해 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단 수입업자는 CBAM 당국에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에 내포된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CBAM certificate)을 구매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배출량과 CBAM 배출권의 수량을 보고해야 하며 배출권(CBAM certificate) 가격은 EU탄소시장과 연계되고 경매 평균가격에 근거한다. CBAM 배출권 운영을 통한 수입은 EU 예산으로 편입된다.

19) EU 법령 포털(eu-lex.europa.eu/summary/glossary) 참조

20) 대상 품목 수, 대상 배출량은 추후 의회 법안에서 수정되는데 이는 후술한다.

CBAM당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 수를 기재 하고,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또한,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전년도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매년 5월 31일)해야 한다. 수입품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서 탄소 가격을 既납부한 경우, EU에 既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시행법을 통해 결정할 것이고,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부문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CBAM 인증서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고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한다.

마. 기존 ETS와의 조율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하며,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배출량에서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을 차감한 만큼 제출해야 한다.

바. 시범적용 기간

동 CBAM은 2023.1.1부터 적용되며 시범 적용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 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시범적용기간 이후 본격 시행 된다. 무상할당은 시범적용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phased out)된다.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

2. CBAM의 개정 경과

동 CBAM법안은 EU의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쳐 확정 발효될 예정이다.²¹⁾ EU의 일반 입법 절차는 특별 입법 절차와 달리 의회가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일반 입법절차에서 의회와 이사회가 최대 3회가

21) EU의회 홈페이지(<https://www.europa.eu/olp/en/ordinary-procedure/overview>)

지 수정안을 상호 검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우에 따라 의회, 이사회, 집행위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통해 1회독에 완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2021년 12월 의회 내 CBAM 주무위원회인 환경보건식품 안전위원회 소속 보고 책임자인 모하메트 차힘(Mohammed Chahim)의원의 수정안(Draft Report)이 제출되었으며 이후 위원회 투표를 거쳐 지난 2022.6.22. 유럽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 되었다.

유럽의회 의결 이후에는 EU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양자간 조율이 불발되면 입법이 무산되지만, 기후 대응의 공감대가 있어 최종 입법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유럽의회 개정 CBAM의 주요 내용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초안에 비하여 유럽의회가 채택한 CBAM은 그 내용이 더욱 보강되고 제도가 강화되었다. EU 의회는 집행위 안에 포함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의 5개 분야 뿐 아니라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의 4개 분야도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켜 총 9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추가된 품목 중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의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시행해 제도의 안착을 꾀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배출 범위 관련 사용 전기에 내재된 배출을 포함하여 간접 배출을 포함하였다. 제도 도입 시점 관련 CBAM의 시범적용 기간을 종전 대비 1년 앞당긴 '2024년 12월 말'로 설정하여 CBAM이 더 빨리 시행되도록 하였다. CBAM이 적용되면 인증 수입업자는 상품이 EU의 탄소배출량 기준 적용 여부를 검증 받고, EU ETS와 가격이 연동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非EU 생산자가 제3국에서 수입 제품 생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EU가 인정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증빙할 수 있으면 인증 비용을 감면 또는 검토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ETS제도를 통해 수출업자가 국가에 기 지불한 온실가스 비용을 동 CBAM 제도가 어디까지 인정해줄지 여부에 대해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²²⁾ 아울러, 의회 수정안은 집행당국(competence authority)을 설치하여 수입자로부터 인증서 접수, 세관당국과의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의회 수정안은 집행위 내에 중앙화된 CBAM 집행기관을 설치한 후 업무를 총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2) 신규섭,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7. 무역협회 pp.18-19.

4. 향후 입법 전망

동 의회 수정안은 2022년 6월 22일 본회의에서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로 가결 처리되었다.²³⁾ 품목은 의회 개정안대로 9개 품목으로 늘었고, 제도 시행시기는 초안에 비해 늦춰져 2023.1.1.부터 2026.12.31.까지를 시범적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2027년에 시행되고 유럽연합 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IV. 동 국경조치의 WTO 합치성에 대한 검토

1. 개관

본장에서는 WTO 규범중 TBT협정을 중심으로 CBAM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동 합치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TBT협정상 기술규정 및 “공정 및 생산방법”(PPM)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CBAM가 적용되는 해당 협정 및 관련 규정을 결정한 후 그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 WTO 등 국제통상법상 탄소국경조

치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연구들은 국경조치의 성격이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관세와 같은 조치인지 또는 수입품에 대한 양적 제한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국산품에도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이 수입품에도 연장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WTO 합치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또한, WTO 규범에서 위배되더라도 GATT 제20조 예외조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되어 왔다.²⁴⁾ 물론 CBAM과 같은 조치들은 WTO 규범내 다양한 협정들에 의해 중첩되어 규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정들에 의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2. 기존 국제통상법에 대한 합치성 검토

탄소국경조치의 국제통상법상 합치성 여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첫째, GATT 제2조 국경세 조정의 법리를 탄소국경조치에 확장 적용하려는 접근, 둘째로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 원칙과 조항에 따라 해당 조치가 국내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비차별적 조치여야 한다는 접근, 셋째로, 상기 GATT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제20조 예외

23) 유럽의회 홈페이지(<https://europarl.europa.eu/press-room>) “Press Releases, CBAM: Parliament pushes for higher ambition in new carbon leakage instrument”, 2022.6.22.

24) 김호철,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통상법률, 2021-2.

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접근 등이 있었다. 기존 GATT 제2조 및 제3조 등은 국경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치와 같이 대상이 되는 제품들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온실 가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치에 대해 GATT 제2조와 제3조와 같이 완제품들의 국경 조치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임이 지적되어 왔다.

탄소 국경조정 조치에 대한 WTO 규범상 합치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통상법학자들 간에 TBT 협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Gary Clyde Hufbauer 등은 저서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2009)”에서 동 국경조정조치가 탄소세가 아니라 “Carbon intensity standard(또는 Carbon footprint standard)”로서 TBT 협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open question)로서 최종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²⁵⁾ Joost Pauwelyn도 동 국경조정조치는 탄소세로 볼 수 있지만, 일종의 “Carbon intensity label”로서 TBT협정상 기술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TBT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Chris Fisher는 환경, 기후변화, GMO 등 관련 규제들이 갈수록 상품의 외적인 차이가 아닌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게 되므로 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들을 GATT상의 동종상품 개념에 의한 외적인 차이에 근거한 검토가 아니라 PPM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⁷⁾

본고에서는 동 탄소국경조치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온실 가스에 대한 조치라는 면에서 상품에 대한 특성 및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규율하는 조치인지 여부, 이 경우 WTO협정상 TBT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TBT 협정 개관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환경 위험 및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무역 장벽으로서 관세와 함께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이 무역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GATT 출범 초기에는 관세와 수량제한 등 보호주의

25) Gary Clyde Hufbauer, Steve Charnovitz, Jisun Kim,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9.3. pp.71-72.

26) Joost Pauwelyn, “US Federal Climate policy and competitiveness concern; the limits and opinions of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paper, Duke University. 2007.4. pp.26-27

27) Chris Fisher, “Who is afraid of PPM?” 2001.5.30, Discussion paper, EU. pp.1-3

정책의 철폐에만 주력하다가 1970년대 동경 라운드(Tokyo Round)부터 이러한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당시 GATT 체결국들은 복수국간 표준협약(Standard Code)를 제정하고²⁸⁾ 동 협약을 통해 기술 규정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²⁹⁾ 동 협약은 복수국간 협정이었기 때문에 설립 목적 달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동 코드에는 GATT와 같은 무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복수국간 협정을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1995년 WTO가 출범할 때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TBT협정과 SPS협정을 WTO 협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TBT 협정은 상품의 생산 공정과 유통, 표시 방법, 소비 이후의 폐기 재활용 등과 관련된 모든 기술 규제, 시험인증 및 규제방법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TBT 협정은 이러한 규제의 도입 목적으로 동 조치가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의 위장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내국민 대우, 최소한 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투명성 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CBAM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산시 투입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라는 면에서 TBT협정의 대상인 “PPM에 대한 기술규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지 TBT협정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TBT협정상 기술 규정과 CBAM

가. 기술규정의 개념

EU는 2021.7월 발표된 CBAM법안 서문에 동 CBAM은 EU의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내포한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임을 명시하고 있다.³⁰⁾ CBAM이 TBT협정이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 규정에 해당된다면

28) <https://www.worldtradelaw.net/tokyoround/standardscode.pdf.download>

29) 스탠다드 코드 서문 [...] to ensure that technical regulations [...] and methods for certifying conformity with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

30) ‘Should differences in levels of ambition worldwide persist, as the EU increases its climate ambition, the Commission will propose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 selected sectors, **“to reduce the risk of carbon leakage.”**(밑줄 필자) This would ensure that the price of imports reflect more accurately their carbon content. This measure will be designed to comply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and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EU’. Commission Communication. (2019).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p.4.

EU는 CBAM을 운용함에 있어 TBT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동 의무에 위배될 경우 여타 회원국들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동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고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TBT 협정에 의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누출 방지라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성 원칙에 근거한 최소한도의 규제라고 인정하고, TBT 협정상 비차별의 무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BT협정에 의해 CBAM이 WTO 합치성이 인정되고 정당화될 수도 있다.

TBT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서 TBT협정 부속서(Annex) I(1)에 규정된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s) 등을 규정하고 있다.³¹⁾ TBT협정 부속서 1.1, 1.2는 기술규정과 표준의 정의를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 또는 관련된 ‘공정과 생산 방법’(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이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요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그 준수가

강제적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적인 기술 문서는 기술규정이며, 준수가 자발적인 문서는 표준이다. 따라서, CBAM이 TBT 협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지를 보려면 동 조치가 TBT 협정상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기술 규정의 정의상 범위와 관련 기술규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하는 모든 상품과 그 PPM에 국한되고³²⁾,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제외되며, “정부”가 소비와 생산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기준과 표준도 제외된다.³³⁾ 또한, TBT협정은 기술규정을 중앙정부의 기술문서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관의 기술규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³⁴⁾

TBT협정상 “기술 규정”을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 규정에서 다루는 “국내 규정”과 비교하면, 그 개념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TBT협정상 “기술 규정”에는 GATT의 국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TBT 협정상 기술 규정은 “상품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31) TBT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는 기술규정과 표준(Standards) 이외 적합성 평가 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도 있다.

32) TBT협정 제1.3조

33) TBT협정 제1.4조

34) TBT협정 제3조

Methods)”을 규정하는 문서로 “준수가 강제적이고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반면, GATT 제3.4조상 국내규정은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공급,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으로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TBT 협정상 기술 규정도 TBT협정 제2.1조상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면에서 동 TBT협정상 내국민 대우 원칙이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 규정에 대한 특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CBAM과 기술 규정 (PPM 개념을 중심으로)

CBAM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악화시키는 제품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TBT협정상 기술 규정의 첫째 요건인 “식별가능한 상품이나 상품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이라는 면에서 일견 둘째 요건인 “상품의 특성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셋째로, 상품의 특성을 규율하는 방식이 반드시 준수가 보장되는 강제적 성격(Mandatory)을

띄어야 한다. 동 셋째 요건 관련 CBAM에는 동 상품 수입을 위해 이행이 강제되고 별칙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BAM이 기술규정의 상기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일견 볼 수 있으나, 다만, 둘째 요건과 관련 CBAM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에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온실가스가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실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인 상품의 식별가능성 및 상품의 특성과 관련 그간 통상법에서 의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 대체로 상품을 제조 생산하는 공정이나 과정 즉 PPM이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쟁점이 되어 왔다.

이 경우 CBAM이 투입된 온실가스가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규정하는 기술문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즉, TBT협정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GATT 제3조 등의 일반적 의무만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대체로 그간 통상법상 학설에 의하면 상품의 비차별 원칙 또는 의무를 적용하는 근거인 상품의 동종성 개념 및 기준과 관련 상품 자체의

35) CBAM법안 제6조에 의하면 “CBAM 신고(Declaration)시에 수입국은 전년도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서 등 제출 요건 등이 TBT협정상 규정상 기술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특성 등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한 구분과 그에 따른 차별만 인정이 되고,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등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에 의해 상품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왔었다.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개념은 WTO가 창설되기 전부터 GATT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며 당시 GATT체제하에서 “상품(product)의 개념”에 상품의 특성이나 성질 뿐 아니라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도 포함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졌다. GATT 체제하에서는 상품의 생산 방법이 상품 자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 정부가 상품이 생산된 방법을 근거로 동종의 외국 상품에 대해 내국세 등 기타 규범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명백하게 GATT 법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³⁶⁾

이후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TBT 협정 내에 기술규정과 표준의 정의에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이 포함되고 GATT는 상품 관련 조치만을

대상으로, TBT협정이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기술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WTO협정 발효 이후에도 계속 TBT협정의 적용 범위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 개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각국의 상품들의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국내적 규제가 증가하게 되어 갈수록 동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PPM의 개념도 생산 제품 자체에서 “추적가능한 변화”의 야기 여부에 따라 구분해 왔다. 첫째, 생산 제품 자체에서 추적가능한 변화(change detectable in the product itself)를 야기하는 PPM을 “상품과 관련된 PPM”(product-related Production and Processes Methods 또는 incorporated PPM, 이하 PR-PPM)이라고 하고, 둘째로, 생산 제품 자체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변화를 야기하는 PPM은 “상품과 관련없는 PPM”(Not-product-related Production and Processes Methods 또는 unincorporated PPM, 이하 NPR-PPM)이라고 한다.³⁷⁾

36)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SD21/R, (3 September 1991), 참조 Robert E. Hudec in supra note pp.187-188.

37) Arthur Appleton, “Private climate change standards and labelling schemes under the WTO agreement on TBT”,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and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edited by Thomas Cottier, Olga Nartov, Sadeq Bigdeli. p.138

상품관련 PR-PPM은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이 건강 및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최종적으로 제조 생산이 완료된 상품 자체에 이전됨으로써 상품 자체를 통해 또는 상품을 사용할 때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³⁸⁾ 물론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최종 상품 자체에는 이전, 잔류 또는 함유되지 않지만 당해 상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했다면 NPR-PPM이라도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WTO에서 NPR-PPM은 합의된 규율이 없고 국제규율 범위 밖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입장이었고, 아직 WTO내에서 NPR-PPM과 PR-PPM의 명확한 경계 및 TBT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 및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간 선진국들은 대체로 NPR-PPM에도 TBT협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고, 개도국들은 NPR-PPM에 TBT협정을 적용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개도국들이 TBT협정을 NPR-PPM에 적용하는 데 반대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엄격한 환

경기술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자본이 부족하고, 각국별로 NPR-PPM에 대한 표준이 다르면 수출품 생산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되고, NPR-PPM이 도입되면 기타 상품과 관련 없는 여타 기준, 즉 노동, 인권관련 무역규제들도 쉽게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³⁹⁾ 또한, 선진국들이 자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생산 표준을 상당히 자의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모니터링하거나 명백한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해진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NPR-PPM개념도 WTO차원에서 완전히 배척되는 것도 아니며, 많은 회원국들에 의해 동 문제가 회피되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GATT 제20조 예외 조항 등 규정에 대한 판례에서 동 PPM개념이 인용되어 오고 있다.

NPR-PPM에 대한 TBT협정의 적용 여부는 TBT협정상 기술 규정과 표준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고, TBT협정 Annex I (1)에 정의된 “기술 규정”상 “관련된 (related)” 생산 과정 및 공정(PPM)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제품과 PPM 사이에 “관련성”을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38) 서현제, “국제경제법-국제통상·통화규범”, 제2판 을국출판사, 1998) p.859.

39) Arthur Appleton, op.cit. p.140

40) Chris Fisher, “Who is afraid of PPM?” 01/05/01, Discussion paper, EU. p.1

것인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US-Tuna II 분쟁에서 패널은 돌고래 안전을 위한 라벨링 조치관련 TBT 협정상 기술규정의 정의에서 첫째 문장은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구체 사안(subject matter) 또는 내용(content)을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이 기술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further elaborations)과 예시(enumerate some specific items)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명백히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레이블링은 일단 TBT협정상 기술 규정이 라고 보았다.⁴¹⁾

결국 TBT협정내 기술규정 논의를 통해 PPM개념이 다루어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PPM을 포함하여 GATT 제3조상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TBT협정 등 PPM개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진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CBAM법안 제6조에 의하면 CBAM 신고(Declaration)시에 수입국은 전년도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품들의 외관 등에 의해 판단할 수 없고 수입

업체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동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동 CBAM은 생산과정에서 포함된 온실가스가 최종상품 자체에 남아 있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NPR-PPM”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NPR-PPM에 대한 TBT협정 적용에 있어 아직 WTO 판례상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이며, 국가들 간에 입장도 각기 상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TBT협정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의 지형이 WTO TBT 위원회에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개도국의 TBT 통보건수가 2001년부터 선진국을 앞서기 시작하더니 2012년에는 80%의 통보건수를 개도국이 점유하고 있다.⁴²⁾ 이제는 개도국들이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규제를 쏟아내고 있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자기 표준을 강요하고 진입비용을 치르게 했던 기술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역공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과거와 같이 NPR-PPM에 대한 선-개도국의 입장차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향후 추이와 입장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³⁾

41) Panel Report, US- Tuna II (WT/DS381/R), para 7.71-7.73.

42) 이승우, “TBT에 부는 변화의 바람, 양날의 칼 되나”, 나라경제, 2013.10월 p.72.

43) 정기대, “무역기술장벽(TBT) 뛰어넘기” pp.8-9 POSRI 이슈리포트, POSCO 경영연구원, 2019.12.11.

다. TBT협정과 GATT/WTO 판례

(1) 서론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2012년 이후 TBT협정 관련 판례들이 연이어 채택되었으며, 미국-정향담배사건(US-Clove Cigarettes case), 미국-참치 돌고래 사건 (Tuna/Dolphin case), 미국-육류 원산지 라벨링 사건(US-COOL case), EC-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사건(EC-Seal Products case) 등이 그러한 판례들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TBT 관련 판례들이 채택되면서 TBT협정상 주요 원칙과 개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었다. 동 판결들을 통해 TBT협정 고유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해석 기준, 불필요한 무역 장애 금지 원칙의 해석 기준 등이 제시된 것은 TBT협정 주요 조항에 대한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기 CBAM의 TBT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되는 PPM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판결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TBT협정내 보다 다양한 원칙과 조항들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분석 필요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CBAM이 TBT협정의 적용 여부가 다루어 질 경우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TBT협정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

TBT협정의 적용 문제를 논함에 있어 해당 조치의 기술 규정, 자발적 표준, 적합 판정 절차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출발점이 되는데, 해당 조치가 동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애초에 TBT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TBT협정상 주요 원칙 및 권리와 의무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⁴⁴⁾

우선 상기 TBT협정관련 판례중 “기술 규정”의 적용범위는 미국-참치 돌고래 사건 (Tuna/Dolphin case)에서 논의되었는데 사실 기술 규정에 대한 범위에 대한 기준은 이전 EC- Asbestos case에서부터 논의된 바 있다. WTO EC-Asbestos 판례는 “상품의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이란 객관적으로 정의가능한(objectively definable) 성질일 뿐 아니라 상품자체의 내재적 성질, 확인수단, 제품의 외관 및 표현양식 등과 같은 성질(qualities intrinsic to the product itself, means of identification, the presentation and the appearance of a product)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⁴⁵⁾ 동 건 판례에 의하면 석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요소는 “객관적으로

44) 서헌제, 전거서, p.859.

45)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WT/DS135/AB/R, 12 March, 2001), para 67

정의가능한(any objectively definable) 성질” 이 아닐 수 있으나, 제품의 “내재적 성질 (qualities intrinsic to the product itself) 뿐 아니라 그 밖의 확인 수단, 제품의 외관 등과 같은 성질(means of identification, the presentation and the appearance of a product) 을 포함 한다”고 하였다. 동 판례에 의하면 CBAM에서도 제품에 투입된 온실가스 투입량을 통해 동 판례가 제시한 “내재적 성질” 또는 “그 밖의 확인 수단”에 의해 제품의 성질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⁴⁶⁾

나아가, EC-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사건(EC-Seal Products case)에서는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다루어졌으며 처음으로 동 분쟁상 해당 조치가 기술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동건 상소기구는 동 해당 조치가 사냥의 목적 또는 사냥꾼들을 식별하는 것이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술조치임을 부정하였다. 즉, 동 사냥의 목적에 의한 구분은 반인도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도덕적 신념과 결부되는 것으로 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동 상소기구는 바다표범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상품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사실 상품의 식별 수단은 PPM과도 직결될 수 있고 상품의 특성만 분석을 하고 PPM이 상품의 식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는 동 해당 조치를 PPM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쉬우나 추후 판례를 통해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⁷⁾

(3) WTO판례상 TBT협정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

(가) 제2.1조 내국민대우 원칙

CBAM이 TBT협정상 기술협정에 해당하여 TBT협정의 기본원칙과 의무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우선 TBT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제2.2조의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우선 TBT협정 제2.1조는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내국민 대우 원칙의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동 조

46)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WT/DS135/AB/R, 12 March, 2001, para 70)

47)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2014.1) Reports of the Appellate Body (WT/DS400/AB/R) para.5.70.

치가 TBT협정 부속서 제1.1조의 의미상 기술규정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수입상품이 국내 상품과 동종 상품 이어야 하고, 셋째, 수입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요건인 기술 규정에 해당 여부는 상기 살펴보고, 여기선 동종 상품 여부 및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기존 WTO 패널들은 그간 동종 상품 여부에 대해 GATT 제3.4조의 전통적 동종상품 기준에 따라 주로 판단하였으나, TBT협정 제2.1조가 문제가 된 US-Clove Cigarettes case에서는 패널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도 동종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이 고려하였다.⁴⁸⁾ 즉, 동종성 결정에 있어 TBT협정 관련 패널들은 목적 관련 접근(purpose based approach)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건에 대한 상소기구도 이에 대해 TBT협정 전문을 중시하면서 TBT협정 제2.1조의 적용은 협정 대상 및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⁴⁹⁾ 동 상소기구는 GATT 제3.4조 뿐 아니라 TBT협정 제2.1조하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등 규제상 관심사가 동종상품 분석에 관련되고, 결국 동종 상품 여부에 대한 결정은 TBT 협정상 서문에 제시된 목적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품간 경쟁적 관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결정이라고 본다.⁵⁰⁾ 그러나, TBT협정에는 GATT제20조와 같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구는 TBT협정의 서문에 제시된 기술규정 조치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WTO TBT협정상 판례를 볼 때 TBT협정 제2.1조는 문언상 GATT 제3.4조와 유사하지만, TBT협정 제2.1조는 기술규정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GATT 제3.4조는 적용범위가 보다 넓어지며, GATT는 국산품과 수입품간 경쟁관계를 중시하지만 TBT협정은 규제 목적이 동종상품 구분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⁵¹⁾

(나) 제2.1조 불리하지 않은 대우
(No less favorable treatment)

US-Clove case 패널은 TBT협정 제2.1조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도 GATT 제3.4조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와 같은 맥락하에서 해석해야 한

48) Panel Report US-Clove case, para7.244.

49) AB report US-Clove case, para85.

50) AB report US-Clove case, para120.

51) Panel Report US-Clove case, para7.119.

다고 하였다.⁵²⁾ Korea-Beef case 패널은 GATT 제3.4조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해 동종상품에 대한 조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입상품에 불리한 방향으로(to the detriment of imported products) 관련시장에서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으나⁵³⁾, US-Clove case 패널은 TBT 협정하에서 동 불리한 대우는 “경쟁조건의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 수입품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에 순전히 기인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특히, US-Clove case 상소기구도 TBT협정의 목적과 취지가 무역자유화의 목적과 회원국의 국내규제의 주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정당한 규제 목적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 규정의 “형태, 양식, 드러난 구조, 운용과 적용”이라는 사안의 특정한 상황과 기술규정이 공평한지(even-handed) 분석하여야 한다고 했다.⁵⁵⁾ 상소기구도 결국

미국의 조치가 TBT협정 제2.1조 위반이고 차별적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패널과는 다른 논리와 분석에 의한 것이다.

CBAM의 경우 TBT협정 제2.1조 내국민 대우에 대한 합치성 여부에 대해 수출업자들이 CBAM 인증서 등 추가적인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특히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경쟁조건을 변경시키는 불리한 대우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수입품에 유해한 효과가 정당한 규제 목적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상기 TBT협정 관련 WTO 판례를 볼 때 CBAM도 TBT협정상 내국민 대우 위배 여부에 대해 GATT 제3조상 내국민 대우와 달리 정당한 규제목적과 균형 유지가 더욱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실제 운용과 적용”까지 검토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 제2.2조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무역 장애 금지 원칙

TBT협정 제2.2조는 두 개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회원국은 국제

52) Panel Report US-Clove case, para7.100.

53) AB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O Doc. WT/DS161/AB/R para.137

54) Id. at para182.

55) Id. at para182.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이어 TBT협정 제2.2조 후반부는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험평가 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 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⁵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US-Clove 사건 패널은 TBT협정 제2.2조의 제1문은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제2문은 1문의 용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1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⁵⁸⁾, 1문과 2문이 “별개의 구별된 의무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⁵⁹⁾

WTO 분쟁해결기구는 동 판례들을 통 TBT협정 2.2조는 정당한 목적의 고려가

내국민 대우 원칙 하에서 고려되는 동시에 최소한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GATT하의 필요성의 원칙을 TBT협정에서도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후 판례들을 거치며 TBT협정만의 필요성 원칙의 해석과 기준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제2.2조와 관련 US-Tuna II case, US-Clove case, US-COOL case 를 통해 해당 조치가 1)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 조치인지 2)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이상의 무역제한 조치인지 검토하는 단계별 테스트를 발전시켰다.

우선 조치의 무역제한성(trade restrictiveness)은 협정 제2.2조의 출발점(a 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며, US-COOL사건 패널은 TBT협정상 “무역제한적”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넓고 GATT에서의 “무역제한성”이 수입 상품에 대한 경쟁 기회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무역효과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TBT협

56) TBT협정 제2.2조

57) TBT협정 제2.2조 후반부

58) AB report, US Tuna case, para.318.

59) Panel Report, US-Clove case, para.7.330.

정 제2.2조상 “무역제한성” 적용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⁶⁰⁾ 또한,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인지에 대해 US-Tuna II case 상소기구는 “정당한(legitimate)”은 “합법적”, “적절한” 등으로 정의하였고,⁶¹⁾ 목적(objective)을 “목표 또는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규제 뿐 아니라 기술 규정의 운영, 디자인, 구조와 구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⁶²⁾ 또한 상소기구는 동 조치가 필요한 것보다 덜 무역제한적이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3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⁶³⁾ 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의 기여 정도, ② 조치의 무역제한성, ③ 목적의 미수행(non-fulfillment)시 발생하는 위험과 결과의 중대함이다. 또한, 동 건의 상소기구는 이와 아울러 해당조치의 여타 대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필요 이상 무역제한적인 조치인지를 검토했다. 동 검토에서 입증책임은 제소국이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적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었

음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US-Tuna II case 상소기구는 미국의 동 조치가 제2.1조에는 위배되지만 제2.2조에는 일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정당한 목적 수행”과 관련 US-COOL 사건 상소보고서는 기술규정이 추구하는 목적 관련 “조치의 문언, 양태, 구성, 구조, 입법의 역사, 그 작용을 검토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⁶⁴⁾ 어떠한 목적이 정당한 목적인지에 대해 TBT협정 2.2조 3문에 “정당한 목적은 특히(inter alia),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행위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라고 하여, 예시적인 열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지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그러한지에 대해 US-COOL 사건 패널은 기술규정이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실제로 공헌하는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정 목적의 성취는 기술규정의 양태, 구조, 작용 및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에 의해 식별”된다고 보았다.⁶⁵⁾

60) Panel Report, US-COOL case, para.7.572.

61) AB report, US Tuna-II case, supra note 28, 322.

62) AB report, US Tuna-II case, para150.

63) AB report, US Tuna-II case, para322.

64) AB report, US COOL case, para.395.

65) Ibid, para.461.

CBAM의 경우 상기 TBT협정 제2.2조에 대한 합치성 여부와 관련 우선 EU집행위가 제시한 CBAM의 정당한 정책 목적은 “탄소 누출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인바, TBT서문과 제2.2조에 제시된 정당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CBAM이 여타 대안조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2.2조상 필요 이상 무역제한적인 조치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 있어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적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었음을 제소국이 입증해야 한다. 상기 TBT협정 관련 최근 판례들에서 동 제2.2조가 검토되었는데 모두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⁶⁶⁾ 이는 TBT 협정상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원칙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가 현재 GATT 제3조와 다른 TBT 협정만의 고유한 원칙을 정립해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회원국의 정당한 국내 규제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CBAM과 TBT 협정의 활용

그간 WTO 판결을 통해 TBT 협정상 주요 원칙 및 조문들의 해석과 적용 동향을 살펴보았다. 상기 TBT 협정관련 판결들이

나오기 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는 수입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등 두 상품간 경쟁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탄소배출”과 같은 제조 과정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들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정당한 국내규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과 이에 따른 차별 조치를 다루고 있는 TBT 협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CBAM과 관련 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검토한다면 다른 협정 및 규정들과 더불어 TBT협정을 원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TO 판례에서는 EC-Asbestos Case에서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 열렸다고 볼 수 있고, EC-Seal Case에서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해 명시적 언급이 없었지만, 최초로 “기술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소기구 판결이 회람되었다. 내국민대우원칙과 불필요한 무역장애 금지 원칙과 관련 상기 판례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점차 TBT협정만의 새로운 고유 적용기준을 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BT 협정상 불필요한

66) US-Tuna/Dolphin II case와 US-COOL case에서는 패널에서 동 제2.2조 위배 판결이 나왔으나 상소기구 판결에서는 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무역장애 금지 원칙도 문언상 요건이 GATT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는 조치들의 목적 달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유연한 해석을 해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속에서 회원국들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권한을 보호하면서 국제규범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모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간 WTO 출범이후 TBT협정을 원용하여 제소된 상당수 분쟁들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분쟁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그간 TBT협정이 원용된 분쟁은 협의 요청 기준으로 2019.5월 현재 54건이며, 대다수 분쟁들이 TBT협정이 단독으로 원용되기보다 여러 WTO협정이 복합적으로 원용되었다.⁶⁷⁾ 동 분쟁사건들에서는 TBT협정과 더불어 GATT협정의 비차별 의무 조항 등 주요 규정들이 원용되었으며, 분쟁이 제기된 분야가 농수산물과 식품인 경우 SPS협정이 같이 원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제소국 입장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모든 쟁점과 가능한 모든 WTO 협정을 원용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TBT 협정 관련 분쟁들의 상당수가 협의에 의해 최종판결 이전에 종료된 것은 동 분쟁들이 회원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국의 “정당한 규제를 제정하여 시행할 주권 사항”을 분쟁해결절차로 다룬다는 데 대한 부담과 민감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최종 판결에 이르는데도 2년여 시간이 소요되고 이행 분쟁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분쟁 대상이 된 기술 규제 등 조치들을 국내적으로 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 저항 등이 야기될 수 있어 판결 이행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종료하고 대상 조치를 국내적으로 시정 또는 개정하여 해결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TBT협정 관련 국내조치들에 대한 국가간 이견과 분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써 분쟁해결기구 이외에 TBT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와 TBT현안을 해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인 TBT 위원회에 특정 무역 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을 제기하는 절차도 있다. CBAM의 WTO 합치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동 특정무역현안(STC)을 통해 TBT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간 논의를 할 수 있다. WTO에는 무역과 환경 현안을 다루는 WTO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있

67) 장용준 등 “무역기술장벽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p.58. 2019. KIEP.

으며, 동 위원회에서도 CBAM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고, 탄소국경조정조치와 관련 환경관련 무역조치에 대해 예외적 또는 완화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직접 탄소배출 등 제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과 이에 따른 차별조치를 무역과 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무역현안(STC)은 1990년대 후반에는 매년 20~30건이 제기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8년 한 해 동안 184건의 현안이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특정무역현안(STC) 절차는 비록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TBT위원회라는 공개적 다자적 채널을 통해 현안 해결을 촉진하고 당사국간 양자해결을 비사법적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⁶⁹⁾

V. 결론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CBAM)제도에 적용을 받게 될 9개 품목에 대한 우

리의 연평균 對EU 수출액은 55억1천만 달러이며, 對EU전체 수출액의 15.3%에 이르고 있다.⁷⁰⁾ 배출범위가 간접배출까지 확대될 경우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력 생산 구조를 가진 한국에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CBAM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對 EU수출액이 연간 32억 달러가 위축될 것으로 보았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⁷¹⁾

이에 대해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ETS 거래 촉진 등 지속적인 탈온실가스 정책을 강화해 가면서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하며 통상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CBAM의 WTO 및 FTA등에 대한 합치성에 대한 통상법적 대응을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GATT상 국경세 조정 및 내국민 대우 등 기존의 통상규범의 분석들과 시각에서 벗어난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검토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CBAM과 같은 “공정 및 생산방법”

68) 정기대, “무역기술장벽(TBT) 뛰어 넘기-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POSRI 이슈리포트, 2019.12.11

69) 장용준 외,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KIEP 2019.12.30.)

70) 신규섭,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7. 무역협회

71) 이재욱, “유럽의회, 탄소국경세 강화해 통과”, 이투뉴스, 2022.7.11.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규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더욱 복잡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법상 정당한 국내 규제 주권과 국제기구의 원칙과 규정 간 충돌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 차이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기존 GATT상 원칙에 의거해서만 대응을 한다면 지나치게 형식적 동등성 확보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해결책이 도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WTO협정 중 공정 및 생산방식(“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TBT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그간 탄소국경조정조치가 기존 GATT원칙 등에 의거한 법적 해석으로 해결되기 어렵게 되자 WTO 규범을 개정한다거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⁷²⁾ 미국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상원 Chris Coons(D-DEL)의원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Carbon Club”을 결성하여 온실가스 공동 가격 및 조화된 국경 조정 체제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했다.⁷³⁾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기존 WTO 규범인 TBT협정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TBT협정상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개념과 기술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견해는 없으나, 동 개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된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동 개념을 반드시 분쟁해결기구로 제소하는 것보다는 WTO 차원에서도 TBT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동 개념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상호 합의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로 제소하는 것은 무역 보복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72) 김호철,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통상법률」(법무부, 2021.6월) pp.43-46.

73) Inside US Trade, “Council of the EU reaches agreement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2.3.16.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민정, 유지영,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통상법률」(법무부, 2016.9월)

김호철,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통상법률」(법무부, 2009.10월)

_____,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통상법률」(법무부, 2021.6월)

신규섭,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KITA Trade Report」(무역협회, 2022.6월)

양정미, 김선옥, “WTO/TBT협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2019.12월)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한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경북대학교, 2014.9월)

이길원, “WTO TBT 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2월)

_____, “EU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항소기구 결정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2호, 2016년 8월)

이재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통상법률」(법무부, 2005.2월)

이주윤, “EU 입법상 상품무역에 관한 비차별원칙과 PPMs의 적용”, 「국제경제법연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5월)

장용준 외,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KIEP 2019.12.30.)

정기대, “무역기술장벽 뛰어넘기”, 「POSRI이슈 리포트」(포스코경영연구원, 2019.12월)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해외문헌〉

Andrew, Hoerner and Frank Mueller, Carbon Taxes for Climate Protection in a comparative world, A paper prepared for Swiss Federal Economic Affairs. June 1996.

Bordoff, Jaso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Brookings Institution. 2007.9.

Coon, Charlie “Why President Bush is right to abandon Kyoto Protocol”, May 11, 2001, Heritage Foundation

Cottier, Thomas Olga Nartov, Sadeq Bigdeli.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and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2009.11)

Houser Trever 외], Leveling the carbon playing field, PPIE, 2008. Washington DC

Hufbauer Gary Clyde 외],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PPIE, 2009, Washington DC

Ismer, R. and K.Neuhoff, Border Tax Adjustment: A Feasible Way to Address Nonparticipation in Emission Trading, CMI Working Paper 36 Jan.2004

Karp, Larry S and Jinhua Zhao, A proposal for the Design of the Successor to the Kyoto Protocol. Discussion paper 2008-0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oject on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

Morris Michael and Ed Hill, Trade is the Key to Climate Change, Energy Daily 20 Feb 2007,

Pawelyn, Joost, US Federal Climate Policy and Competitiveness Concerns: The Limits and Options of International Trade Law, Nicholas Institute for Environment Policy Solutions Working Paper 07-02(NI April, 2007)

Pollin, Robert James Heintz, Heidi Garrett-Peltier, “The Economic Benefits of Investing in Clean Energy”, 2009,6.18, http://www.americanprogress.org/issues/2009/06/clean_energy.html

Ponnanbalam, Arjun, “US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the Use of GATT XX to justify a competitiveness Provision in the wake of Brazil-Tyres” 40(1)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1(2008)

Stewart, Terence (ed). “Opportunities and Obligations: New Perspective on Global and US Trade Policy(2009)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http://www.hm-treasury.gov.uk/>

GATT,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

GATT,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GATT Report of the Working party in Border Tax Adjustment, (adopted on 2 December, 1970), L/3464, para 4 “Taxes and Charges for Environmental purpose-Border Tax Adjustment”

OECD, The competitiveness impact of CO₂ Emissions reduction in the cement sector, COM/ENV/EPOC/CTPA/CFA(2004) Nov.2005

WTO, Mexico-Taxes on Soft drink, wt/DS308/R, 23 March, 2006.

_____, Panel report Brazil Tyre Panel report

_____,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 12 March, 2001

_____, Argentina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Bovine Hides and the import of Finished Leather

_____, China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AB report, WT/DS 339,340,342/AB/R April 5 2001.

_____, Australia-Certain Measures Concerning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Other Plain Packag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Tobacco Products and Packaging - Panel report (WT/DS467/23/30 August 2018)

_____,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2014.1) Reports of the Appellate Body (WT/DS400/AB/R)

_____,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2018.12) (WT/DS381/AB/RW/)

_____,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 Reports of the Appellate Body (2014.10) (WT/DS384/AB/R)

_____,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 (2012.1)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406/AB/R)

WHO, Climate change: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public health policy

Pew Center, “Legislation in the 110th Congress related to Global Climate Change”
<http://www.pewclimate.org/>

_____,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참조, www.pewclimate.org

International Trade Daily,

Inside US Trade

[국문초록]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 검토

- TBT협정을 중심으로 -

류창수

EU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CBAM을 도입했다. EU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carbon intensive industry)에서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WTO 규범에 위반될 뿐 아니라 EU의 교역대상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초래하여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철강, 시멘트 등의 수출에도 피해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주로 CBAM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WTO-compatibility) 여부에 대한 논의는 GATT 제2조의 국경세 조정, GATT제3조의 내국민 대우, GATT제20조의 예외 조항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GATT상 국경세 조정 및 내국민 대우 등 기존의 통상규범의 분석틀과 시각에서 벗어난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검토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WTO 협정중 “제품의 공정 및 생산과정”을 협정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TBT 협정의 적용 여부 및 TBT 협정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CBAM과 같은 공정 및 생산방식(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규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국내법상 정당한 국내 규제 주권과 국제기구의 원칙과 규정들간 충돌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TBT 협정상 PPM 개념과 기술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견해는 없으나, 동 개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된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동 CBAM에 대한 문제를 분쟁해결기구로 제소하는 것보다는 WTO 차원에서도 TBT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동 개념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상호 합의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로 제소하는 것은 무역 보복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탄소누출, 탄소국경거래제(CBAM), 국경세조정, TBT협정, 공정과 생산과정(PPM),
기술규정

[Abstract]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f the EU and its compatibility with WTO rules focusing on TBT agreement

Changsoo RYU

The EU introduc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to solve the “Carbon Leakage” problem and level playing field. From the EU’s point of view, in order to achieve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a mechanism to address concerns of carbon-intensive industries about rising costs and weakening competitiveness and to simultaneously maintain i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re have been lots of discussions on whether the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s in violation of WTO norms and criticisms that it can cause trade wars by causing trade retaliation by its trading partners.

Discussions up to now on the WTO-compatibility of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s such as CBAM have been mainly focused on border tax adjustment in Article 2 of GATT, national treatment in Article 3 of GATT, and exceptions in Article 20 of GATT. However, in order to analyze border adjustments in-depth and prepare for substantially effective measures, a more creative and future-oriented approach could be explored, which might depart from the framework and perspective of existing trade norms such as border tax adjustment and national treatment under GATT.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of the TBT Agreement, which deals with the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among the WTO agreements, was reviewed and the main provisions of the TBT Agreement analyz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regulations on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 like CBAM will increase and take on a more complex form. In this situation, although there has not yet been any consensus on the scope of PPM concept and “technical regulations” under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the new regulations like CBAM. Rather than bringing the CBAM issue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t could be desirable firstly to raise the issue to the TBT committee and reserve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s a last resort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ducing trade retaliation.

Keyword: Carbon leakag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Border Tax Adjustment, TBT Agreement, Process and Production Mechanism, PPM

제15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김 희 은

I. 회의 개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이하 ‘자문위’)는 지적재산권 범죄 집행에 관한 회원국의 노하우 공유 및 집행 성과 공유를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1회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2. 8. 31 ~ 9. 2 개최된 제15차 자문위는 2019년 9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방식의 자문위로서,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 공유 및 지적재산권 존중 의식 제고를 위해 각국이 진행한 캠페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주요 논의사항

1.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가. 온라인 IP 침해 대응방안

(비디오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토의)

우리 대표단은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비디오게임 산업은 젊고 글로벌 하며 빠르고 고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산업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다. 대표단은 분야별로 복제(cloning), 에뮬레이터 및 ROMs, 모딩(Modding), 사용자 창작 콘텐츠 등의 분야로 구분해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에서의 저작권격권(게임제작자) 등 지식재산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대표단은 엄밀하게 게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답하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수준으로 볼 수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칠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IP 집행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대응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표단은 질문의 취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나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스페인의 디지털 환경에서 IP 침해대응을 위한 행정절차 및 자기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는 스페인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스페인은 2012년 지식재산위원회 제2과를(S2CPI) 설립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S2CPI는 지식재산법 통합협정문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스페인은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소개하면서, 행정절차의 목표는 온라인 IP침해가 자발적으로 철회되는 것인데, IP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S2CPI가 확인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지식재산법에 따르면 정보사회서비스 법에 따라 주인을 모르는 웹사이트는 사법부 승인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IP 침해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최초 행정결정이 내려지고, 48시간 내에 불법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된다. 스페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방지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나. 지재권 집행 공조

(브라질의 불법복제 및 지식 재산 범죄에 관한 대응노력) 국가영화기구(National Film Agency)의 역할은 브라질의 시청각산업을 진흥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시청각 불법복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국이 불법 시청각 콘텐츠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불법 콘텐츠 유통은 연간 5백만 달러에 추정되는 비용을 야기하고, 세수손실과 같은 사회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가영화기구의 주된 불법복제 방지활동으로는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간 저작권 침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이 있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응해 경찰조사와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제, 협력개선, 원조활동 확대, 인식제고 활동)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이지만 매년 5,000여 개의 위조품이 압수되는 등 위조품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은 2021~2023년 포괄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고, 품질이 불량하거나 위조된 물품 구매로부터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현재 시행 중이다. 또한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재정부, 내무부, 정보사회부 등 범부처간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라벨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담배에 의무화되는 등 위조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카자흐스탄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관행을 채택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경조치에 있어서 칠레관세청의 역할과 경험) 칠레는 2017년 지재권법 개정을 통하여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상표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간단한 조사 후 확실한 경우에는 출시를 중지하고, 권리자에게 잠재적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통보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사례는 전통적인 물품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물품(자동차 부품 등)으로 진화해왔다. 규제와 법집행기구간 협력은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데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건,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조품 관련 움직임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주요 수사 사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다양한 정부부처의 행정담당자들에게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특허청은 상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산업재산조사과 내에 특사경을 처음 신설했다.

2019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허, 디자인 등의 분야에도 특사경을 도입해 특사경 활동 범위를 넓혔다. 2021년에는 기술침해수사를 전담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를 신설하였고, 수사인원도 2019년 4월 6명에서 2022년 현재 22명으로 증원되었다. 현재 수사범위는 특허,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 침해이다.

수사절차는 사건에 대해 신고가 있으면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이다.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948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 (Overheated Hoist Transport)의 사례를 들며 특사경에 의한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검찰의 역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지적 재산(IP)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정부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식재산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형사처벌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므로 기소중지 등의 대안도 모색해왔다.

현재 특허법 등에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이 있으나 이전에는 지식재산 범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2015년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설치되었고 선임검찰이 배치되었으며, 복잡한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대전지검으로 당사자 동의 하에 이송하는 등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문체부, 특허청, 국가

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을 해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고 있고, 지식재산 범죄 중재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의 중재를 활용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존중 담당관 프로그램 소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주도로 설립된 ‘지식재산존중 담당관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Respect Officer Program)’은 지식재산존중 인력양성 사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 및 민간기관 전반의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 향상, 법률 준수, IP 보호를 목표로 한다.

SAIP-WIPO 아카데미의 IP 정책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식재산존중 담당관은 소속기관의 IP 인식 수준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SAIP 협력으로 기관별 IP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 대상 IP 컨설팅 제공, 정기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IP 법률과 규정이 준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1단계 교육 및 실무연습을 포함한 자격취득 과정, 2단계 성과달성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76개 정부 기관이 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향후 2022년 말까지 미가입 상태의 정부기관 및 스포츠클럽의 가입을 장려하고 2023~

2024년 민간분야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세계관세기구의 Container Control Program) 2004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관세기구(WCO)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컨테이너 컨트롤 프로그램(Container Control Program, CCP)은 불법물품의 국경을 넘는 이동방지를 위한 해상, 육상, 항공화물에 대한 위협관리, 공급망 보안강화, 무역 원활화 등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CCP는 의류, 화장품, 담배, 장난감 및 전자제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선적물을 압수하였다.

CCP는 피해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 부재를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점검하고 IP 침해 물품의 압수를 가능케 하는 관련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이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은 민간·산업 차원의 관심 및 지원 부족임을 지적하며, 가령 CPP를 통해 IP를 침해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브랜드 소유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당국이 관련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브랜드 소유자가 무관심한 상황에서는 물품 압수로 인해 저장공간 낭비만 초래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CCP는 브랜드 소유자 대상 지적권 인식 강화 세미나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압수 컨테이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별 주요 브랜드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다. 지재권 집행에서 중개자의 역할

(저작권 온라인 집행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운영자의 역할(문체부 신탁기금 연구사업)) 문체부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저작권 집행에 초점을 두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가능한 규제 제도를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DNS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Registries),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Domain Name Registrar), DNS 리졸버(Resolver) 등 DNS 제공자가 침해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단은 “무과실” 금지명령구제(no-fault injunctive relief basis)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라고 언급하며,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와 도메인 네임을 비활성화, 차단조치할 것과 리졸버 침해 사이트의 IP주소 변환을 금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방적 조치로 레지스트란트(registrant)가 소유권 등록 시 DNS 제공자측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비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Trusted Flagger Arrangement) 제도 활용 등 DNS 제공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권장한다.

(영국의 위조품 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Real Deal Campaign’) 2009년 지재권보호를 위한 전국시장단체(National Market Groups for Intellectual Protection, NMG)에 의해 설립된 Real Deal Campaign은 영국 국내의 시장과 베틀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된 인식제고 교육 이니셔티브로, 민간 기업의 자금지원과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cross-sector partnership)이다. NMG는 거래표준위원회 공무원을 위한 지재권 집행 교육용 툴킷을 제작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AIM 유럽 브랜드 협회-위조품 근절에서 중개자의 역할) AIM은 중소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2500개 브랜드 상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유럽 브랜드협회(European Brands Association)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브랜드 권리와 온라인 중개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고객 정보 파악을 위한 적절한 실사, 거래약관에 지식재산 보호 조항 포함, 효과적인 통지 및 게시 중단 조치 시행, 위조제품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인 게시 중단 처리, 반복적 침해자 정책 시행 등을 제안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음반산업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중개자의 역할)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s, IFPI)의 2021년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무허가 출처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거나 입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음악을 청취하는 비율이 16~2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무려 38%로 증가했다고 강조하였다.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과 발매 전 불법복제 및 무단배포는 음반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현재의 통지 후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 환경에

서는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FPI는 온라인 중개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을 맞이하며, 면책조항의 적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 강력한 고객확인 의무(Know Your Business Customer, KYBC) 실시, 투명성 개선 및 반복적 침해자 정책(Robust Repeat Infringer Policies)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호스트 업체가 두더지 잡기(whack a mole) 게임처럼 재생산되는 불법복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향후에도 재게시 되지 않도록 삭제상태를 유지하는 통지 및 차단 유지(notice and stay down)을 제안하였다.

(DHL Express와 글로벌 세관규정 프로그램) DHL Express는 세관규정준수를 기업문화의 핵심요소로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규정에 어긋난 물류방지를 위해 예방적 조치(엑스레이 검사, 선적전 검사, 데이터 분석 등)은 물론 글로벌 세관규정 프로그램(Global Customs Compliance Program)을 설립하였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운송 방지, 과소신고 방지, 정확한 물품정보 제공, 정확한 배송정보 기재 등을 4대 목표로 언급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카드의 지재권침해방지 이니셔티브)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불법 복제 방지 정책(Anti-Piracy Policy)으로 비즈니스 위기 평가·방지 프로그램(Business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BRAM), Mastercard Alert to Control High Risk (MATCH)를 소개하였다.

불법행위 조사를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BRAM은 권리자 또는 지재권 집행기관이 잠재적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 거래 추적 및 결제 승인 내역 확인을 통한 매입(Acquire) 또는 고객 신원 파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MATCH는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점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매입사에 공유하는 제도로 정보의 사전고유를 통한 상점에 대한 평가 및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 본 제도는 매입사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특정 상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라. 지재권 집행에서 새로운 기술

(EUIPO, 지재권보호와 집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기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위조품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지재권청(EUIPO)이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위조품과 저작권 침해 물품이 세계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제3국으로부터 EU 수입품의 5.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UIPO는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실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솔루션의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마치고자 함을 밝혔다.

(텐센트, 기술혁신을 통한 중국의 저작권 보호 촉진) 블록체인, NFT와 같은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등장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작권의 전 단계, 즉 창출, 활용, 사업화, 보호, 관리 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창출 단계에서 타임스탬프, 디지털 워터마크,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적용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Shenzhen의 Qianhai 법원은 블록체인,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Zhixin IP Cloud 재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재권 재판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기술과 산업의 진화에 따라 입법 및 기술 또한 이에 부응하여 전향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재권 침해 사건의 판결

(인도, 동적 금지명령 및 가처분) 지재권 재판에서 금지명령(가처분)은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는 권리자들을 위한 금지명령 발령에 친화적인 국가인데, 침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지명령이 존재하며, 지재권 분쟁에서 판결 절차의 일부로 금지명령이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의 진화로 지재권 침해의 본질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존과 전혀 다르게 분화되었고, 기존의 금지명령 또한 실효성을 잃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동적 금지명령’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침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특정 URL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 몇 초 만에 동일한 콘텐츠를 새로운 URL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특정 URL을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이 무력화되었다.

동적 금지명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다수의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을 가능케 하나, 비례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지재권보호협회(AIPPI),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AIPPI는 판매 외의 지재권 침해(수입, 보관, 제조, 사용

등)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연구를 2019년에 진행하였으며, 2021년의 후속 연구에서는 손해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지 여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비판매침해의 핵심은 잠재적인 판매 가능성이 근거하여 잠정적인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침해제품의 가격, 손실된 로열티, 정신적 피해, 회전을, 특허제품에 대한 수요, 생산 비용과 규모, 권리자의 신용 하락 등을 고려하였다.

(국제상표협회(INTA), 예비 가처분 입법의 조화에 관한 연구) INTA는 47개국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적 가처분(사전적 금지명령)의 다양한 기준을 식별한 결과, INTA가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2020년 INTA 이사회는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효과적인 집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예비적 가처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덴마크의 위조상품 방지 인식 제고 활동) 덴마크는 2019년 1월, 위조 및 불법 복제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정품 구입이 좋은 이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식

제고 웹사이트(www.ichoosereal.dk)를 개설하였다. 위 웹사이트는 정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본의 위조품 구매 및 판매 방지 캠페인) 일본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2004년 8월 위조방지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2020년 4월 일본 특허청으로 편입되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위조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며, IP 보호의 중요성과 위조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해외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상표법 및 디자인 법을 개정하여 외국 사업자가 국제 우편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관세법도 개정하여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말리의 산업재산권 진흥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 말리의 지식재산 증진을 위한 센터(CEMAPI)는 2012년 조직되어 지재권 보호 증진, 잠재적 지재권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인식프로그램 구현, 위조 및 부정 경쟁 방지 등 지식재산 존중과 국가역량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치안관사, 법무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말리의 지재권 존중 구축에서의 역할과 책

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IP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여 젊은 층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위조방지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멕시코는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해 상공회의소, IP 권리자 및 기업협회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하여 불법 복제 근절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재권 인식 제고 및 합법적인 자산의 안전하고 적법한 사용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는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고, 기존 침해 목록에 영업비밀 위반 및 도메인 네임이 추가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산업재산권 및 혁신 진흥 인식 제고 활동) 나이지리아 당국은 IP보호 및 사용을 장려하고, 혁신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산업재산권 및 혁신 진흥을 위한 기관(AN2DP)을 설립하여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만 지역사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지재권 인식 제고 캠페인) 오만은 학교 및 혁신부에서 학생 연령에 따라 상호작용이 활발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해 훈련 받은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새

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WIPO 소비자 설문조사 키트를 활용한 소비자 인식 조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WIPO는 필리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기금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응답자는 기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지역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농촌과 도시지역의 모든 사회경제적 범주에 속한 18~65세의 고용 및 실업자 남녀가 선정되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 정품 구입 방법을 알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무료 불법 복제물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으며 해당 방법을 사용한다고 인정하였다.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과 편리함이며, 정품을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 복제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태국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태국은 자문센터(IPAC)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든 IP 상담 및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고등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센터(TISC)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P 관리 및 특허 검색 관련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WIPO 지원을 통한 국가별·지역별 실무교육 성공 사례

(알바니아의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기소에 대한 WIPO 교육자료 맞춤형) 알바니아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와 같은 IP 침해 활동이 마약 밀매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매뉴얼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매뉴얼 개발의 목적은 알바니아의 경찰·관세기관·검사·판사 등 다양한 기관 내법 집행 관련 전문가 그룹 역량을 구축하여 지재권 집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TRIPS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알바니아 형법 및 주요 저작권·산업재산권 관련법 등 국내법에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하며, 주로 수사관, 검사 판사가 수사와 재판 양상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재권 집행에 대한 WIPO 아랍어 사례집 지원) 대부분의 아랍 지역에서 지재권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부재하여 지재권 관련 법률 및 법원 결정을 다루거

나 분석하는 아랍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WIPO 지식재산존중국은 아랍 지역 지재권 관련 판결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요 사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WIPO의 지식재산존중국에서 아랍어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본 사례집은 주로 상표 및 저작권의 민·형사상 집행을 다루며, 이외에도 부정경쟁·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제재(형사조치) 및 손해산정(민사 구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III. 회의 참석 소감

1.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관련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하여 많은 회원국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점이 인상에 남았다. 다른 회원국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처럼 특허청 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허청이 수사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발표하자, 많은 회원국들이 위 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여 우리의 제도가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선구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가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동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동적 금지명령은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콘텐츠를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다른 URL로 옮기는 것이 쉬워진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수단이다. 다만,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인터넷과 블록체인, NFT 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저작권 집행 수단을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 해야 하는 니즈를 많은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관련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토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지식재산권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 자체를 보지 않도록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위 부분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집행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 활동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말로 예정된 제16차 자문위에서는 인식 제고 활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분과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강 윤 성

법무부 국제법무과 실무관 장 준 혁

I. 회의 개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제1분과(이하 ‘분과’)는 제36차 분과 회의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공여(Access to credit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제38차 분과 회의는 2022. 9. 19.부터 23.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진행되었는데, 분과는 사무국에서 지난 분과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된 문건 A/CN.9/WG.I/WP.128(Note by the Secretariat)을 검토하였다.

II. 주요 논의 사항

1. 성안될 문서의 구조 및 형식

사무국은 문건 제3장에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하 MSMEs)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원(가족 및 친구의 지원, 대출 및 지분 수단, 핀테크)을 포함하고, 제4장에서 MSMEs의 신용 공여를 지원하는 모든 입법적 및 비입법적 조치를 다루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의 가독성 및 내용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원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 법적 이슈 및 해결책에 관한 내용은 제4장으로 옮기자는 미국의 제안이 우리를 포함한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NATLAW 등의 동의를 거쳐 수용되었다.

한편, 사무국은 MSMEs를 위한 신용 공여라는 주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과의 목적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임시 용어인 “향후 문안(Future text)”을 “지침 초안(draft Guide)”으로 대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는 법적인 내용에 강

한 초점(strong legal focus)을 두지 않는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제4장에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삽입하자고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대표단이 이에 동의하였다.

2. 제2장 - MSMEs와 그 수명주기 단계별 자금조달 수요 관련 논의

문건 제2장의 서두에 열거된 MSMEs의 특징 중 일부는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할 수 있음을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도 MSMEs의 특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일본은 또한 담보부 거래(secured transactions)에 관한 내용은 기업의 법적 형태(legal form)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UNCITRAL의 문건은 형태의 구별 없이 모든 주체에게 이익이 됨을 의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지지를 받아 수용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장에 있는 “이슬람 금융상품” 관련 내용이 굳이 이 부분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캐나다는 UNCITRAL 텍스트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전통을 지칭하지 않으므로 “이슬람법 전통”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 장은

MSMEs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다루므로 위 내용을 제3장으로 옮기자는 이탈리아의 절충안이 논의 끝에 받아들여졌다.

3. 제3장 - MSMEs의 이용가능 자금원 관련 논의

가. A절: 가족 및 친구의 지원/Section A: Family and friends support

캐나다가 이 절을 가족 및 친구로부터 발생하는 지원의 특성 및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축약 및 재구성하자고 제안하였고, 미국과 이집트가 동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지원의 특성에 관한 논의에서 MSMEs의 소유자(owners)와 그들의 가족 및 친구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집트가 이에 동의하였다.

말리 대표단이 지원의 필요성 관련 논의에서 신용 공여와 관련하여 청년이 겪는 어려움도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중국, 이집트가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청년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와 다르며, 후자는 다량의 관련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반면, 전자도 그러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벨기에 등 국가는 캐나다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며, 여성에 대한 신용공여의 중요성, 여성이 특정 국가에서 마주하고

있는 공식적 어려움(formal challenges)을 재차 강조하였다. 각국 대표단의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자, 의장은 청년 기업가가 신용 공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되 다른 장에서 다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미국, 이집트 등의 지지를 통해 수용되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MSMEs와 지원을 제공한 가족 및 친구 간에 추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 MSMEs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카타르가 이에 동의하였다.

나. B절: 대출 수단 / Section

B: Debt tools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에 관한 논의 순서의 일관성과 “운전자본 금융(working capital finance)”이라는 부제(subheading)로 인한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이 절을 재구성하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에 미국 등이 동의하였다. 본과는 이전 회의에서 “신용제 공자”와 “신용공여수단”을 참조하여 채무 수단을 분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상기하며, 상업 신용(가장 전통적인 도구), 신용카드, 금융리스, 팩토링(공급망 금융에서의 팩토링 사용 포함), 창고증권(보증서 포함), 신용장, 신용협동조합, 미소금융, 공공금융 기관의 순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편 상업 신용 관련 관(款, subsection)에서 상업 신용은 담보부나 무담보 대출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담보부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캐나다의 제안이 있었다.

1) 신용카드(Credit cards)

캐나다는 문건의 다른 부분에서 일부 MSMEs가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MSMEs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국가가 은행에게 MSMEs에 특화된 업무용 신용카드의 발급을 요구하도록 권고하자고 제안하였고, 본과는 이를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 미소금융(Microcredit)

캐나다는 첫 문장에서 미소금융은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자고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비공식 미소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신용협동조합(Credit co-operatives)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 소유가 아닌 기타 유형의 조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캐나다의 제안이 있었다. 이에 코트디부아르는 일부 국가

(jurisdiction, 法域)에서는 순환 저축(rotating savings)과 신용조합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예금 수령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분과는 이 절에서 MSMEs의 신용공여를 위해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집단 저축 기구(collective savings arrangements)가 사용될 수 있음을 간단히 언급한 후, 위 각 조직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는 이 관의 표제를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집단 신용 및 저축 약정(credit cooperative and other collective credit and savings arrangements)”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기된 신용협동조합과 구분되는 “비공식적인(informal)” 신용협동조합이 있음을 서술하는 문장에서 위 용어를 “미등기(unregistered)”로 대체하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4) 상업 신용(Commercial credit)

제3장에서 논의된 법적 쟁점 및 해결책을 제4장으로 옮기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담보의 부족, 정보비대칭, 경쟁의 부족과 디지털 챌린저 뱅크(digital challenger bank) 등 내용도 제4장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이탈리아 등이 동의하였다. 미국은 제4장에 서술된 각 해결책은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제4

장은 상업 신용의 규제 체계가 아닌 법적 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기관(regulated finance institutions)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대부업이 규제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금제공자(financers)는 담보물의 매각이 어려울 때 대개 그 동산담보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므로 담보물 매매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국가가 MSMEs에 신용공여 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 관에서 MSMEs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정책을 열거한 문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금제공자간의 경쟁이 상업 은행(commercial banks)의 대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재하자는 NATLAW의 견해가 있었으나, 경쟁이 반드시 저비용의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싱가포르의 지적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은 일부 국가(jurisdiction)에서 “상사계약(commercial contract(s))”이 상인과 관련된 특수한 용어로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용어를 “계약”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였다.

5) 금융리스(Financial lease)

분과는 리스 종료 후 금융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구매는 의무가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과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구매(eventually purchase)”를 “중국적 구매가 가능한(possible ultimate purchase)”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기 제도가 금융리스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산 등기부(asset registries)”를 “담보설정자 기반 등기부(grantor based registries)”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IDROIT 케이프타운 협약에서는 자산 등기부를 사용하는 반면,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담보설정자 기반 등기부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한편 유리한 세제(favorable tax rules)가 금융리스를 신용공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가적인 유인임을 언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리스”를 “내구자산의 조건부 매도(conditional sale of durable assets)”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문건과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캐나다의 반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6) 공공 금융 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이 절에 국가 개입의 예시로 MSMEs 지원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기술하자는 벨기에의 제안이 있었으나, 공적자금과 조세에 관한 사항은 분과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서 각 국가의 재량사항이라는 의장의 설명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권고가 아닌 설명만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에 따라, 분과는 지침 서두에 각 국가가 MSMEs 지원을 위해 많은 수단(직접적인 국가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을 사용하였음을 언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개별적인 수단들을 직접 다루지는 않기로 하였다.

7) 운전자본 금융(Working capital finance)

분과는 “운전자본 금융”이라는 부제를 없애고 새로 만든 별도의 관(款) 하에서 다양한 수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부실채권의 매각(sale of non-performing receivables)”과 더불어 팩토링(factoring)과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에 관한 논의를 “매출채권금융(receivable financing)”이라는 부제 하에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일본이 동의하였다. MSMEs가 정부에 물품을 공급할 때의 팩토링(government factoring)에 관한 내용을 다루자는 도미니

카공화국의 견해와 이 부제 하에 이슬람 팩토링 모델을 포함시키자는 NATLAW의 견해도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warrantage’¹⁾가 창고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내용을 모두 합치고 창고증권금융(warehouse receipt financing)에 주안점을 두자는 견해(단, warrantage를 그 예시 중 하나로서 제시할 수 있음)와 이슬람 무라바하(Murabaha)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한편 분과는 (i) 회사간 대출(inter-company loan)의 예시로서의 팩토링과 (ii) 신용장이 다른 신용공여 수단보다 저렴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다. C절: 지분 수단 / Section

C: Equity tools

이 절이 유의미한지 및 지침 초안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특히 자금 확보를 위한 지분 수단이 협의의 신용 공여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懷疑)가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이는 지분 수단에 관한 논의를 개별 절로 다루지 말고 단축하자는 견해와 지침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는 관련 내용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

다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신용 공여와 금융 접근성(access to finance)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이전분과 회의에서 확인되었다는 견해, 이 절에서의 지분 수단은 MSEs가 아닌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견해 등도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이 절을 삭제하는 대신 도입부에서 지침이 신용 수단(credit tools)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MSMEs의 자금조달 수요가 지분 수단(비즈니스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서도 만족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는 이탈리아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지분 수단 관련 내용(예컨대 ‘가족 및 친구의 지원’ 절)을 유지하는 한편, 그 활용이 어려운 이유 및 해결책을 서론에서 간단히 언급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이 있었는데,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동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라. D절: 핀테크 수단 / Section

D: FinTech tools

미국은 핀테크가 새로운 상품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지원하는 기존의 상품에 불과하므로 이 절은 지침 초안의 다른 절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부분의

1) 농민들이 수확물의 일부를 몇 달 동안 창고에 비축하는 동시에 이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다음 농작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는 때까지 재고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국가가 동의했으나, 플랫폼 기반 대출과 투자 기반 부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 이 절의 일부 주제는 별도의 절을 두어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제시되었다. 특히 이탈리아는 투자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의 범용성, 특히 청년 창업가들에 의한 활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과는 플랫폼 기반 대출에 관한 논의와 대출 크라우드펀딩(P2P 대출)에 대한 설명은 유지하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간의 구분은 유지하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내용은 모두 제거하고, 디지털 모바일 신용 관련 설명은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하기로 하였다.

한편 외출이 불가능한 여성들이 어떻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신용공여를 받는지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여성이 마주하는 시간적 제약에 관한 본 문장의 기술이 정확함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4. 제4장 MSMEs의 신용공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Measures to facilitate MSME access to credit) 관련 논의

가. A절: MSME 신용공여를 위한 대출 수단을 지원하는 입법적 틀 / Section A:

A legislative framework supportive of debt tools to enhance MSME access to credit

1) 일반 의견(General comments)

지침 초안의 많은 절(section)에서 여성 소유 MSMEs에 대한 신용공여를 배제하는 입법적, 사회적, 규제 장벽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지침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평등을 촉구하는 일반적 권고를 포함하자는 NATLAW의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권고가 2015년 UN의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특히 SDG 5)에 부합하는바, 의장은 MSMEs가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도 위 권고에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본과는 지침 초안의 권고에서 일반적인 차별을 언급함과 동시에, 「상업등기의 주요 원칙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a Business Registry)」(이하 “상업등기 입법지침”)의 권고 33, 34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위 두 가지를 권고사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여성의 은행 대출, 신용 금융, 경제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러 국제법률문서

(international instruments)의 권고사항을 주석에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이란, 이집트는 무역법 및 UNCITRAL의 위임과 무관한 문서(예컨대 UN 국제인권협약)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업등기 입법지침」의 권고 33, 34에도 유사한 주석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사무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권고에 주석을 달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제4장에 열거된 신용공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및 비입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여성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예컨대 담보권 등기에 대한 접근)을 지침 초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현행 국제 기준(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1) 동산담보물

(i) MSMEs 신용공여를 활성화하는 담보 거래 제도의 기준

분과는 문건의 권고 1과 2를 하나로 합치고,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이하 MLST)이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뿐 아니라 양도담보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MSMEs의 신용공여를 활성화하는 담보거래 제도의 주요

특징을 권고에 직접 나열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MSMEs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쟁점의 경제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안심을 주는(comfort)”, “낮은 신용도(low creditworthiness)” 등 표현을 지양해야 하고, “보증(guarantee)”이라는 용어는 인적 보증도 포함하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NATLAW는 동산, 특히 장래 자산(future assets)이 일부 MSMEs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일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문건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효과적인 담보거래 제도의 주요 특징에 등기제도를 통한 대세효를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나아가 동산의 종류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and documents)도 포함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우리 대표단은 MSMEs가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MLST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캐나다, NATLAW 등이 동의하여 받아들여졌다.

(ii) 효율적인 등기 제도의 주요 특징

미국은 등기제도를 통한 대세효와 등기제도의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NATLAW는 이 부분에서 등기의 형식적 심사주의

(notice registration system)에 관하여 논의하고 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이 부분이 등기가 담보권의 대세효 및 순위 결정을 위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지 등기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NATLAW는 등기부상 정보에 관한 색인 및 채무자 성명을 통한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MLST에 따른 등기부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본 관(款, subsection)이 동일 자산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의 설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LST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일 등기부상 수개의 담보등기를 허용하고, 그 우선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본과는 이 관에서 MLST 규정상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일 등기부상 수개의 담보등기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2) 부동산 담보물

이 관에 관하여 동산과 부동산에 각 적용되는 등기 제도 간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이에 캐나다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담보권 등기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장래 자산이 아닌 현존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등기 정보가 당해 재산의 등기부에 기재되는 반면,

동산 담보의 경우 등기 정보가 채무자 명의로 기초하여 작성된다고 설명하였다.

3) 향후 개선 가능한 영역(Possible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1) 물적 담보의 사용(Use of collateral)

본과는 이 관에서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문건에서 다루어졌으나 문건의 1(a)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과 어떠한 문건에서도 다루진 적이 없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신의성실의무와 집행 등 쟁점을 그 예시로 들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많은 MSMEs가 기한 내에 대출을 상환하므로 MSMEs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언급은 피하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MSEs의 담보물 확보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들에 관한 내용은 이미 MLST에 언급되어 있거나 본과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자고 하였다. 한편 미국은 담보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와 협상력이 강한 채권자의 요구에 따른 경우를 구분할 것 또한 제안하였다. 한편 MLST를 참조하여 담보계약상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관하여 회원국이 채택할 선택사항을 문단 126에서 자

세히 설명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가치평가(valuation)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로서 자산의 교환 가치가 아닌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실현되는 담보가치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ATLAW는 실제 시장 맥락에 부합하는 감정평가 메커니즘 및 담보권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만족되는 효율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공매 생태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또한 모두 수용되었다.

효율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관한 세계 각국의 예시를 삽입하자는 캐나다의 견해가 있었고, 나아가 이 문단에서 강제집행의 효율 제고와 집행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 관에서 별도의 권고를 삽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MLST, 담보거래에 관한 실무지침(the Practice Guide to Secured Transactions) 등 담보거래에 관한 기존의 UNCITRAL 문건을 넘어서는 권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MSMEs에 대한 보호를 소비자 보호와 유사한 정도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모호한 권고가 독자를 오도할 수 있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인적 담보

분과는 이 부분에서 MSME 소유자나 기업인의 보증이 MSME가 설정한 담보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건 중 MSE의 소유자가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술에 관하여는 MSE가 별도 법인격을 가질 때만 해당함을 명확히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하여 자금제공자가 보증인의 자산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금제공자가 제3자의 특정 자산에 담보권을 취득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산을 압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물상보증도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MSE의 소유자(MSE가 별도 법인격을 갖는 경우)가 인적 보증을 통해 경영에 대한 개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보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절의 도입부에 개인보증은 보증인이 갖는 개인자산의 범위에 한하여 신용공여를 돕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언급하기로 하였다.

인적 담보의 형태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제출한 문건에는 인적 담보(보증)는 서면

으로 하고, 보증인이 정당하게 서명하여야 하며, 법적 구속의 의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지지를 표하였으나, 지침 초안에 보증인이 보증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권고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도 제시되었다. 싱가포르의 해당 권고가 국가가 판단할 사항인 형식 요건(예: 종이 또는 전자, 서면, 서명 또는 공증)을 건드리지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이탈리아가 이에 동의하였다.

분과는 논의를 거쳐 (i) 보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보증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고자 하는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ii) 입법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증의 형식 요건을 명시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계약 체결 전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에 관한 권고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이탈리아, 일본 등은 공개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권고에 정보 공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반면 캐나다는 정보 공개가 개인 보증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

든 유형의 은행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권고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논의 후 분과는 권고 3(a)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고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분과는 이 관에 (i) 채무자의 자산 상황, (ii)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채, (iii) 채무자의 주채무에 대한 담보권에 관한 정보가 종종 정보공개와 관련됨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침 초안의 주석은 중립적인 어투로 좋은 관행의 예를 제시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이 수용되었다.

한편 보증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에게 더욱 빈번히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 변경의 경우 보증인은 그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변경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도록 문건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분과는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라는 용어가 책임의 보충성(subsidiary) 또는 연대성(solidarity)과는 다른 쟁점을 제시하므로 이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권고 32)과 관련하여, 분과는 권고 중 (b)

2) The law should:

- (a) Clearly establ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inancier and guarantor in a personal guarantee agreement; and

를 삭제하고, (a)와 관련하여 자금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보공개의무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법이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b)를 수정하여 책임의 보충성(subsidiarity) 또는 연대성(solidarity)을 추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인적 담보’ 관(款) 중 보증의 집행 부분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도산법상 부채 탕감과 보증채무 집행을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관련 문단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이 관의 도입부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 조치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기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과는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2021)」에 근거한 국가 입법 조항의 제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관의 마지막에 일반 권고를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B절: MSMEs의 신용공여를 위한 지분 수단을 지원하는 입법적 틀 / Section B: A legislative framework supportive of equity tools to enhance MSME access to credit

분과는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a Business Registry (2018)」와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Limited Liability Enterprises (2021)」를 기반으로 한국가 입법 조항을 제정하도록 두 개의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 절을 수정하여 사업 형성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논의와 사업 운영을 별도로 다루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싱가포르의 분과가 지분 수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지분투자자 유치에 관한 내용 또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탈리아가 이에 동의하였다. 분과는 이 절에서 유한책임기업과 관련된 신용공여 촉진 방안(예: 기업 구조, 경영 참여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소금융(Micro-credit)에 관한 내용이 이를 과거 MSMEs에 대한 신용공여의 비공식적 형태였다는 듯이 묘사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b) Specify whether the liability of the guarantor is subsidiary or solidary to the obligation of the principal debtor.

다. C절: MSMEs의 신용공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Section C: Other measures to enhance MSME access to credit

1)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s)

이 관의 도입부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이익과 결점을 모두 다루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다만, “overcom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라는 문구에 관하여는 신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고 신용보증제도가 금융기관의 실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한 문구와도 상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MSMEs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신용보증제도 참여의 조건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사무국은 본과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의 공공신용보증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아직 대출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공공신용보증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다.

2) MSMEs의 신용도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Measures to facilitate the assessment of MSMEs creditworthiness)

본과는 회원국에 기업신용평가에 관한 법을 둘 것을 권고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신용평가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집트는 MSMEs가 자기 정보에 접근하고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문건 중 보충적 정보원(情報源)으로서 공공기관의 기록에 관한 (b)관이 균형 있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 개인정보 및 비밀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본과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MSMEs에 비해 덜 어렵다는 점, 담보등기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명시되도록 문건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3) 자금난에 처한 MSMEs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Restructuring support for MSMEs in financial distress)

본과는 다른 부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축약하고,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and Small Enterprises」의 권고에 기초하여 입법규정을 제정하도록 권장하는 일반적 권고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4) 신용공여의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
(Procedures and mechanisms for resolving disputes on access to credit)

대체적 분쟁해결의 이용을 촉진하는 「UNCITRAL 유한책임기업에 관한 입법지침」의 권고 32를 참고하여, 신용공여 분쟁의 해결에 있어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의 촉진을 가볍게 권고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다. 캐나다는 의무적 중재 조항이 갖는 리스크와 중재의 고비용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특정 유형의 분쟁해결 방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권고를 삽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할 자유의 중요성 및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용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MSMEs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논의 후 분과는 「UNCITRAL 유한책임 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의 권고 32에 따라 가벼운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주석에 관련 국가적 구제 방법의 예시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분쟁의 범위가 신용공여보다 넓을 수 있으므로 이 관의 제목을 “분쟁해결 방법”으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또한 강제집행(judicial enforcement)과 사적 실행(extrajudicial enforcement)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탈리아는 “채무자 리스크를 통제(control borrower risk)”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과는 가액이 낮은 분쟁에 있어서는 중재가 소송보다 시간 또는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강제되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자는 캐나다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하기 전 첫 단계로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에 파나마가 동의하였다. 분과는 조정이 합의 절차로서 반드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일부 국가에서 외부 구제 절차에서의 불복에 대한 제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구제 절차(내부 구제 절차 포함)를 규제하여 그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이 드러나도록 문건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5) MSEs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Measures to tackle low financial literacy of MSEs)

분과는 지침 초안에 논의된 법적 조치들이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들에 의해 더욱 강화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고를 추가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이 부분이 MSMEs의 역량 구축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권의 표제를 “금융이해력 향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과 도미니카공화국은 MSMEs의 신용력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MSMEs의 재정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 또는 민관협력의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분과는 이에 동의하였다. 담보거래 개혁과 같은 법적 개선과 대출 전환(credit transitions)의 효율을 제고하는 원리에 관한 교육이 금융기관에 유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캐나다의 제안 또한 수용되었다.

5. 집행 관련 논의

문건이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동산담보권의 집행에 관한 논의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었다. 한편 지침의 최종본에서는 집행과 관련하여 UNIDROIT에서 수행 중인 관련 작업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6. 지침 초안의 제목 및 “MSMEs” 용어의 사용

분과는 지침 초안의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지만, 이전에 마련한 두 입법 지침과의 일관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MSMEs)”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지침의 최종적인 제목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MSMEs) 신용 공여 지침”으로하기로 하였다.

III. 결어

제1분과 제38차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장 및 사무국의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정의 성과와 결과물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대면 참석한 대표단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국가의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회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여성 창업가에 대한 국가 금융기관의 차별, 젊은 세대의 실업 및 신용도 문제 등 현안 논의 과정에서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및 사회 문화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났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존재하는 자금조달 관련 기술 수준, 국가의 법제 지원 등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 및 기업 법제의 우수성

에 비추어볼 때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비
교법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도 어
젠다를 세팅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 6. 30 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와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

(별지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능한 때: 게재 불가
-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쉽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송부하거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장]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직무대리)

[편집위원]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22년 11월 30일 발행(통권 제157호)

1994년 5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eISSN : 2765-5962

발행인 : 법무부장관 한 동 훈

편집인 : 기획조정실장 권 순 정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국제법무과 / 전화 : 02-2110-3660 / FAX : 02-2110-0327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4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57

November 30, 2022

Publisher Han, Dong Hoon / Minister of Justice

Editor Kwon, Soonjeong /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 Coordination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